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56호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9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17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1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22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서 공시송달 공고 2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28호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공고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31호 도로의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36호 공시송달 공고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3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36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3호 인천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7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5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9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6호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7호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2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97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103

회 람									
--------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185),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52)

2022. 8.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59-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 대1-14호선)사업
 - 명칭: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광3-15호선: 연장(L)=260m, 폭(B)=7m, 2차로 확장
 - 대1-14호선: 연장(L)=150m, 폭(B)=3.25m, 1차로 확장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2. 8.22.~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토 지 조 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1	장수동	산137-8	임	6,075	39	인천광역시	-	
2	장수동	662-15	도	194	194	인천광역시	-	
3	장수동	산135-3	임	25	25	인천광역시	-	
4	장수동	662-13	도	115	115	인천광역시	-	
5	장수동	754	도	2,494	29	국(국토교통부)	-	
6	장수동	662-11	전	76	76	인천광역시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7	장수동	662-2	전	6	6	인천광역시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	
8	장수동	727-2	천	199, 163	39	국(국토교통부)	-	
9	장수동	662-12	전	107	107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0	장수동	662-3	창	56	56	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	
11	장수동	662-4	답	92	92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장수동)	
12	장수동	661	답	115	11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3	장수동	660-3	창	75	7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4	장수동	660-12	전	208	208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5	장수동	659-15	답	80	8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6	장수동	659-7	답	50	5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7	장수동	688-6	도	1,171	145	인천광역시	-	
18	장수동	666	수	82,223	120	인천광역시	-	
19	장수동	695-3	도	247	123	인천광역시	-	
20	장수동	727-1	천	1	1	국(국토교통부)	-	
21	장수동	698-1	답	7	7	인천광역시	-	
22	장수동	727-37	천	2,267	39	국(국토교통부)	-	
23	장수동	659-3	답	30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동 ***호 (산본동, **아파트)	
						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수동 ***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23	장수동	659-3	답	30	30	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수동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빌라 *동***호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아파트 ***-****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 ***동 ****호	
24	장수동	660-2	전	176	176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수동 ***	
						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빌라 *동***호	
						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수동 ***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아파트 ***-****	
						김**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동 ***호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 ***동 ****호	
25	장수동	660-13	전	9	9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26	장수동	659-2	답	41	41	인천광역시	-	
27	장수동	659-16	답	124	124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9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선두리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사항)변경을 함께 같은 법 제88조 제6항,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8. 22.

인천광역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체육 시설	골프장	강화군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	245,000	감)4,713.3	240,286.7	인고 제2009-137호 (2009.4.27.)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선두리 골프장	• 면적 : 245,000㎡→240,286.7㎡ (감4,713.3㎡)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 도시관리계획(시설: 골프장) 결정도면(생략): 변경 없음

□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 명칭: 강화 선두리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토지이용면적(m ²)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245,000	240,286.7	감)4,713.3	100.00
체육시설용지		55,820	50,729	증)5,091	21.11
건축시설용지		5,940	2,008	감)3,932	0.84
기반시설용지		21,192	20,121	감)1,071	8.37
녹지 용지	소 계	162,048	167,428.7	증)5,380.7	69.68
	완충녹지	72,481	77,861.7	증)5,380.7	32.40
	복원녹지	16,872	16,872	-	7.02
	원형 녹지	72,695	72,695	-	30.2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명: (기정)(주)강호개발 대표이사 오진국
(변경)(주)강호개발 대표이사 김영만
-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남산리 14-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2013. 9.13. ~ 2022.08.31.
- (변경) 2013. 9.13. ~ 2022.11.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연번	소재지	기 정				변 경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지 번	지 목	면적 (㎡)		지 번	지 목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지 적	편 입			지 적	편 입						
1	길상면 선두리	산536	구	1,091	393	1575-4	구	381.0	381.0	국(국토교통부)					
2	길상면 선두리	1053-25	답	608	608	1575-1	임	52,282.4	52,282.4	주식회사 강호개발 (수탁자: 한국자산 신탁(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14-1				
3	길상면 선두리	1053-23	대	377	377										
4	길상면 선두리	1161	잡	397	397										
5	길상면 선두리	산422-36	임	49,613	44,116										
6	길상면 선두리	산422-35	임	33,198	31,159										
7	길상면 선두리	산422-33	임	89,039	77,068										
8	길상면 선두리	산422-32	임	64,581	33,067										
9	길상면 선두리	산422-1	임	33,183	33,183										
10	길상면 선두리	산422-25	임	23,905	23,905										
	1575-6					임	19,010.7	19,010.7							
11	길상면 선두리	1053-126	임	535	535	1575-3	체	535	535	주식회사 강호개발 (수탁자: 한국자산 신탁(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14-1				
12	길상면 선두리	1053-124	임	984	192	1575-2	도	192	192	강화군					
소 계				297,511	245,000			240,286.7	240,286.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금번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 및 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2.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신고·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공익 및 민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가권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 지시할 수 있으며, 위 인가조건의 미 이행 등 기타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 할 경우는 인가권자가 동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끝.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92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예금압류예고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처분내용
1	에어*리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산단로 12*	60거*370	송도골프장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2021.10.8. 11:40)	과태료 106,600 (가산금 포함)

- 공고기간 : 2022. 8. 19. ~ 9. 3.(15일간)
- 공고 대상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독촉고지서 및 예금압류예고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당사자께서는 문

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증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공고기간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17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 8 . 22.

인 천 광 역 시

소속	인천광역시 서구		직위	(전)서구의회의원		성명	김명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500	1,000	460	2,040	
본인	대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65-12번지 18.00㎡ (18.00㎡ 증가)	0	1,000	0	1,000	임대보증금.
모	전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398-5번지 324.00㎡ 중 46.30㎡	800	0	221	579	가액변동.
모	전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398-6번지 258.00㎡ 중 36.86㎡	700	0	239	461	가액변동.
▶ 건물(소계)			157,000	46,000	1,000	202,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월드아파트 건물 84.93㎡	156,000	45,000	0	201,000	가액변동.
본인	창고(전세(임차)권)	기타(국외 등)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65-12 대지 0.00㎡ 건물 0.00㎡ (대지 18.00㎡ 감소, 건물 18.00㎡ 감소)	1,000	0	1,000	0	토지 보증금으로 변동.
본인	창고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건물 18.00㎡ (건물 18.00㎡ 증가)	0	1,000 (1,000)	0	1,000	컨테이너 (본인사용).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930	31,320	4,160	43,09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소형승용(프라이드) 배기량(1,600cc)	3,850	0	1,140	2,71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2년식 포드익스플로러 배기량(2,000cc)	10,500	0	1,440	9,06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07년식 베르나 하이브리드 배기량(1,399cc) 감소	1,580	0	1,580 (1,000)	0	소유권 상실(매도)

본인	자동차	2022년식 카니발 배기량(2,151cc) 증가	0	31,320	0	31,320	신규 등록(매입).
▶ 예금(소계)			101,703	40,400	49,011	93,092	
본인		(주)KB손해보험 16,080(480 증가), (주)KEB하나은행 9, 국민은행 168(31 증가), 농협손해보험 600(200 증가), 농협중앙회 30,172(18,405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605(116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51, 중소기업은행 1,220(168 증가)	29,705	22,748	3,348	49,105	가계자금 변동 .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62(92 감소), DB손해보험(주) 4,278(188 증가), 농협중앙회 7,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551(540 증가),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14,330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4,864(14,864 증가), 신한은행 12, 우리은행 185(3,172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750(469 증가), 키움닷컴증권 14(714 감소), 한화손해보험 294(84 증가)	29,180	16,276	18,439	27,017	
모		국민은행 24, 농협중앙회 12,543(27,224 감소), 신한은행 3,617(1,200 증가)	42,208	1,200	27,224	16,184	
장남		농협중앙회 786(176 증가)	610	176	0	786	
▶ 증권(소계)			1,400	99	214	1,285	
본인	상장주식	금호에이치티 0주(4주 감소), 쌍방울 1주(1주 증가)	8	0	8	0	매도.
본인	비상장주식	(주)함지 375주	37	0	0	37	
배우자	상장주식	TOC스틸 0주(8주 감소), 삼성전자 12주, 엘아이에스 60주(60주 증가), 엠케이전자 10주, 오디텍 5주, 한미반도체 10주(5주 증가)	1,355	99	206	1,248	
▶ 채무(소계)			160,629	7,916	10,385	158,160	
본인	금융채무	(주)KB손해보험 6,340, 국민은행 0(79 감소), 농협중앙회 5,000, 중소기업은행 124,290(1,937 감소)	137,646	0	2,016	135,630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DB손해보험(주) 850, 신한라이프(오렌지라이프) 0(6,029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6,029(6,029 증가), 우리은행 8,503(1,684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7,148(1,231 증가)	22,983	7,916	8,369	22,530	금융정보 신규 등록 추가.
총 계			116,904	110,903	44,460	183,347	증감액: 66,443천원 (가액변동: 41,858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서구		직위	(전)서구의회의원		성명	이순학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42,700	0	0	242,700	
본인	다세대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동인스카이빌 건물 33.00㎡	62,700	0	0	62,700	
본인	다세대주택(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천우명가 A 건물 63.00㎡	180,000	0	0	18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500	0	0	5,5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카니발 배기량(3,000cc)	5,500	0	0	5,500	
▶ 예금(소계)			77,634	43,100	50,707	70,027	
본인		농협중앙회 381(49,847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1,970(280 증가), 새마을금고 1,505(5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032, 신한은행 44,167(41,992 증가), 우리은행 1,527(152 감소), 중소기업은행 344(92 증가)	76,656	42,682	50,312	69,026	생활자금사용
장녀		국민은행 210(204 증가), 농협중앙회 24,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17(138 증가)	109	418	76	451	
차녀		국민은행 0(319 감소), 우체국 550	869	0	319	550	
▶ 채무(소계)			159,700	0	0	159,700	
본인	금융채무	우리은행 97,000	97,000	0	0	97,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동인스카이빌 임대보증금	62,700	0	0	62,700	
총 계			166,134	43,100	50,707	158,527	증감액: -7,607천원 (가액변동: 0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중구		직위	(전)		성명	최찬용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425,000	0	0	425,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하늘도시우미린1단지아파트 건물 59.96㎡	240,000	0	0	240,000	변동 없음
차남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동부출장소 병점동 남수원두산아파트 건물 0.00㎡ (건물 0.00㎡ 감소)	0	0	0 (0)	0	소재지 주소 착오입력 정정
차남	아파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남수원두산아파트 건물 84.82 ㎡	185,000	0	0	185,000	소재지 주소 착오입력 정정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42,160	0	0	42,160	
본인	자동차	2016년식 지엠 크루즈 배기량(1,800cc)	12,870	0	0	12,870	변동 없음
장남	자동차	2009년식 i30 배기량(1,582cc)	3,000	0	0	3,000	변동 없음
차남	자동차	2019년식 싼타페(SANTAFE) 배기량(1,995cc)	26,290	0	0	26,290	변동 없음
▶ 예금(소계)			82,597	2,775	5,888	79,484	
본인		(주)KB손해보험 8,231(336 증가), 국민은행 92, 농협 은행 178, 대신증권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680(120 증가), 삼성생명보험 3,420, 삼성화재해상 보험 245(140 증가), 신한은행 4,024(1,248 감소)	21,530	1,201	1,853	20,878	생활자금 활용 등을 위한 예금 인 출
장남		(주)KEB하나은행 159, 국민은행 1, 농협은행 7, 스탠 다드차타드은행 5, 신한은행 436, 우리은행 1, 케이뱅크 50(50 증가)	609	50	0	659	

차남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4,605(231 증가), 농협은행 0(37 감소), 대신증권 4, 삼성화재해상보험 438(12 증가), 신한은행 2,999(385 감소), 우리은행 4,017(2,614 감소), 케이뱅크 1(20 감소), 한국투자증권 532(859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928(82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3,423(1,079 증가)	60,458	1,524	4,035	57,947	생활자금 활용 등을 위한 예금 인출
▶ 증권(소계)			4,581	0	828	3,753	
차남	상장주식	현대모비스보통 18주	4,581	0	828	3,753	주식 시세 변동
▶ 채무(소계)			448,154	1,053	8,629	440,578	
본인	금융채무	(주)KB손해보험 730,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20, 삼성생명보험 2,640, 신한은행 151,598(2,640 감소), 신한카드 2,302(3,747 감소)	164,277	0	6,387	157,890	채무액 일부 상환
차남	금융채무	AIA생명보험주식회사 8,070(530 증가), 신한은행 159,869(2,242 감소), 우리은행 110,00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949(123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800(400 증가)	283,877	1,053	2,242	282,688	채무액 일부 상환 등
총 계			106,184	1,722	-1,913	109,819	증감액: 3,635천원 (가액변동: -828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부평구		직위	(전)		성명	마경남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702,000	0	0	702,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동대우아파트 건물 84.44㎡ 중 42.22㎡	141,000	0	0	141,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부평코오롱하늘채 건물 85.00㎡	420,000	0	0	420,000	
배우자	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일동대우아파트 건물 84.44㎡ 중 42.22㎡	141,000	0	0	141,000	
▶ 예금(소계)			101,758	28,683	2,447	127,994	
본인		농협손해보험 1,950(200 증가), 농협은행 24,057(13,234 증가), 농협중앙회 16,862(6,486 증 가), 라이나생명보험 6,127(347 증가), 신한라이프생 명보험 9,671(208 증가), 신한은행 1,516(31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60(2,322 감소), 중소기업은행 8,156(1,125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866, 한 화손해보험 3,097(192 증가)	54,861	21,947	2,446	74,362	예금/보험 가액변동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8,501(400 증가), 국민은행 17, 농협 은행 39, 농협중앙회 3,876(3,800 증가), 메리츠화재 해상보험(보험) 8,800(200 증가), 우리은행 95(25 증 가), 우체국 15, 케이디비생명보험 4,825(483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9,814(866 증가)	40,208	5,774	0	45,982	
장남		국민은행 920(80 증가), 농협중앙회 2,897(401 증가)	3,336	481	0	3,817	

장녀		(주)KEB하나은행 2(1 감소), 국민은행 920(80 증가), 농협중앙회 2,911(401 증가)	3,353	481	1	3,833	예금/보험 가액변동
▶ 증권(소계)			43,430	7,077	5,358	45,149	
본인	상장주식	EDGC 2,790주, SK바이오사이언스 7주(7주 증가), STX 1,409주, 대한항공 58주(58주 증가), 아이진 98주, 위메이드맥스 0주(17주 감소), 이트론 16,759주(472주 감소), 제주맥주 1,629주(336주 증가), 카카오뱅크 95주(24주 증가), 현대바이오 413주(10주 감소)	43,430	7,077	5,358	45,149	주식 가액변동
▶ 채무(소계)			500,779	1,832	0	502,611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2,611(1,832 증가)	779	1,832	0	2,611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부평코오롱하늘채 임대보증금	500,000	0	0	50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346,409	33,928	7,805	372,532	증감액: 26,123천원 (가액변동: 689천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22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 단속시스템에 적발(22년5월)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공 고 명 :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라.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상시운행제한 위반(22년5월)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불가 93건,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확인
4. 공고기간 : 2022. 8. 22, ~ 2022. 9. 4.(14일간)
5. 납부기한 : 2022. 9. 30.

6.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및 증가산금(1.2%)가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국제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우 21554)
 - 팩 스 : 032)440-8749
 - 이메일 : a4408749@korea.kr

7.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839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	(주)경*정*	86부35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6일, 11시02분13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200,000	200,000	0
2	김*오	90노62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2일, 10시50분58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3	김*숙	18두212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6일, 17시59분49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00,000	200,000	0
4	주*해	92마075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4일, 22시20분02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서울방향) 5차로	200,000	200,000	0
5	함*흠	05보77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3일, 12시31분30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4차로	200,000	200,000	0
6	김*섭	80버97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9일, 05시44분31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향방향-송도)(2차로)	200,000	200,000	0
7	이*식	20거37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4일, 05시36분54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200,000	200,000	0
8	신*호	54버388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4일, 06시51분14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600(1차로)	200,000	200,000	0
9	전*훈	76모60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0일, 18시42분22초	서울특별시 양재IC 5차로	200,000	200,000	0
10	최*규	86머138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7일, 13시11분3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2차로)	200,000	200,000	0
11	손*현	02루18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7일, 21시04분29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0,000	200,000	0
12	백*	58라687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8일, 07시38분08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13	양*성	81어264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09시27분22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암대로 2차로	200,000	200,000	0
14	김*경	27버516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13시19분37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4차로	200,000	200,000	0
15	임*성	80무20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0일, 09시20분13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200,000	200,000	0
16	박*수(공채면제)	28리32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2일, 14시38분5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200,000	200,000	0
17	김*석	90부46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7일, 07시48분0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200,000	200,000	0
18	강*원	90가93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05시20분10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3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9	정*준	25라148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05시22분54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600(3차로)	200,000	200,000	0
20	박*우	48로443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2일, 18시20분10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2차로	200,000	200,000	0
21	김*민	13무29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7일, 11시21분20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2차로	200,000	200,000	0
22	월*중*상* 주*회*	82소694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7일, 14시19분26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2차로	200,000	200,000	0
23	이*노	74노371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1시12분02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600(4차로)	200,000	200,000	0
24	김*욱	86노611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4일, 12시37분53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00,000	200,000	0
25	김*순	17어687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0일, 22시42분26초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380-15 여주방면 2차로	200,000	200,000	0
26	주*완	65무55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8일, 18시13분15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1차로	200,000	200,000	0
27	황*현	59머11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2시38분09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200,000	200,000	0
28	최*일	15오20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2시49분19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1차로)	200,000	200,000	0
29	김*정	80소541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4일, 14시14분20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00,000	200,000	0
30	전*학	인천81마520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10시15분05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200,000	200,000	0
31	P*K A*E*S*Y	41도408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1일, 09시13분50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139-7 2차로	200,000	200,000	0
32	정*근	23두435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6시20분22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3차로	200,000	200,000	0
33	김*정	55머82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9일, 12시55분19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34	정*수	17버805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20시22분20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2차로)	200,000	200,000	0
35	김*연	86러31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11시22분16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2차로	200,000	200,000	0
36	홍*복	인천34도88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0일, 17시11분18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1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37	정*식	인천31두52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1일, 12시23분23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기좌동 600(2차로)	200,000	200,000	0
38	J*C*B*O* K*L* A*A*	17저244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1일, 16시12분59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200,000	200,000	0
39	A*S*R*K*U*O* K*A*R*L*O	72저85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0일, 20시04분30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3차로	200,000	200,000	0
40	이*남	25다780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9일, 16시56분27초	인천광역시 서운체육공원 3차로	200,000	200,000	0
41	이*복외황*옥	26조45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8일, 14시59분36초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65-3 화성방면 2차로	200,000	200,000	0
42	이*원	81수356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4일, 10시05분24초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리 380-15 여주방면 2차로	200,000	200,000	0
43	공*희	77더152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7일, 19시36분31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두리 598-67 안성방면 3차로	200,000	200,000	0
44	황*달	21조64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4일, 09시27분30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45	박*수	35머71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1일, 18시38분26초	인천광역시 삼목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4차로)	200,000	200,000	0
46	조*우	86서531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5일, 07시01분10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27-175(1차로)	200,000	200,000	0
47	장*주	87머643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5일, 10시15분22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200,000	200,000	0
48	김*필	25라18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15시22분20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5차로	200,000	200,000	0
49	김*애	04다473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16시58분37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3차로	200,000	200,000	0
50	정*진	80도143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2일, 11시36분34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0,000	200,000	0
51	정*점	76가626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0일, 06시14분03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00,000	200,000	0
52	지*녀	51조14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0일, 17시49분54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6-3(1차로)	200,000	200,000	0
53	이*석	27러12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8일, 09시46분44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4차로	200,000	200,000	0
54	이*주	19루949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9일, 23시00분05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55	한*수	64보57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4일, 17시07분11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1차로)	200,000	200,000	0
56	김*자	45보170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6일, 12시58분07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200,000	200,000	0
57	전*선	80너883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5일, 12시36분42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1차로	200,000	200,000	0
58	A*I A K*U*I*R A* J*B*R*	06주46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0일, 12시46분02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3차로	200,000	200,000	0
59	백*돈	61라989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15시55분49초	서울특별시 서하남IC 4차로	200,000	200,000	0
60	유*산	43조732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5시51분38초	경기도 수원시 산업단지입구(수원방면) 3차선	200,000	200,000	0
61	김*영	05보114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3일, 14시05분43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1차로	200,000	200,000	0
62	N*A*A* N*B*E* E*A* N*A*A*	86주67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6일, 10시03분29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99-36 1차로	200,000	200,000	0
63	이*연	28루44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9일, 18시45분34초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광사IC) 3차로	200,000	200,000	0
64	이*규	02다795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1일, 21시39분19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200,000	200,000	0
65	손*식	73보236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3일, 05시09분16초	서울특별시 올림픽대로(잠실방향) 2차로	200,000	200,000	0
66	(주)엠*이*합*설	87너18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3일, 16시52분50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1차로	200,000	200,000	0
67	김*만외1(김*규) *채권면제	03조361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7일, 15시39분16초	서울특별시 대곡교후방 5차로	200,000	200,000	0
68	박*윤	40가498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6일, 13시12분24초	경기도 군포시 군포IC(군포방향) 1차로	200,000	200,000	0
69	정*학 외 1인(김*순)	91다750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0일, 18시35분15초	인천광역시 신상교앞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06-212(3차로)	200,000	200,000	0
70	임*호	86서839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20시34분53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1차로	200,000	200,000	0
71	양*승	60구59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02시54분29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4차로	200,000	200,000	0
72	(주)8*산*	20보284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1일, 17시52분27초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73	(주)휴*랜*	88보28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5일, 16시33분51초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3-5 안성방면 2차로	200,000	200,000	0
74	이*수	52도783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8일, 11시52분45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1차로)	200,000	200,000	0
75	김*현	47다15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9일, 12시49분10초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0(2차로)	200,000	200,000	0
76	임*호	07주440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5일, 15시59분36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200,000	200,000	0
77	김*식	46다20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7일, 14시31분25초	인천광역시 삼목1사거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3차로)	200,000	200,000	0
78	박*철	89다710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5시29분22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1차로	200,000	200,000	0
79	이*중	01소758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0일, 18시22분59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4차로	200,000	200,000	0
80	정*교	86누38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09시48분47초	인천광역시 천상교앞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3-22(1차로)	200,000	200,000	0
81	최*영	65서60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31일, 12시03분45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82	(주)지*씨*디	94다37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2일, 12시53분07초	인천광역시 강화인삼백화점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394(2차로)	200,000	200,000	0
83	조*환	58버133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1일, 14시15분12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4차로	200,000	200,000	0
84	백*연	34라962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8일, 12시57분55초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남항방향-승도)(2차로)	200,000	200,000	0
85	김*석	65누824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8일, 21시41분15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200,000	200,000	0
86	신*정	03마16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8일, 21시09분37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0,000	200,000	0
87	변*돈	60부787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1일, 05시32분16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3차로	200,000	200,000	0
88	유*복	02어72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2일, 13시51분15초	인천광역시 북항고가입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0(3차로)	200,000	200,000	0
89	김*문	73조896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2일, 14시21분04초	인천광역시 남항부두앞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175(2차로)	200,000	200,000	0
90	유*희	37소969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25일, 19시43분36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200,000	200,000	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91	장*진	07누869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4일, 08시28분22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200,000	200,000	0
92	이*수	47어154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14일, 18시01분16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200,000	200,000	0
93	한*호	27서229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2년05월01일, 18시22분10초	경기도 부천시 소사고교 2차로	200,000	200,000	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28호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 (4년)

2.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 제1금고 :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표이사 진옥동]
- 제2금고 :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준학]

3. 취급회계

- 제1금고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제2금고 : 기타특별회계

※ 회계(기금)운용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금융기관이 지정되었거나, 회계운용상 지정된 금고 소관 회계 업무 일부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4. 시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유희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5.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 제1금고 : 1순위 (주)신한은행(1,156.29점), 2순위 (주)하나은행(1,085.26점),
3순위 (주)국민은행(1,069.13점)
- 제2금고 : 1순위 농협은행(주)(1,157.34점), 2순위 (주)하나은행(1,081.58점),
3순위 (주)국민은행(1,078.96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31호

도로의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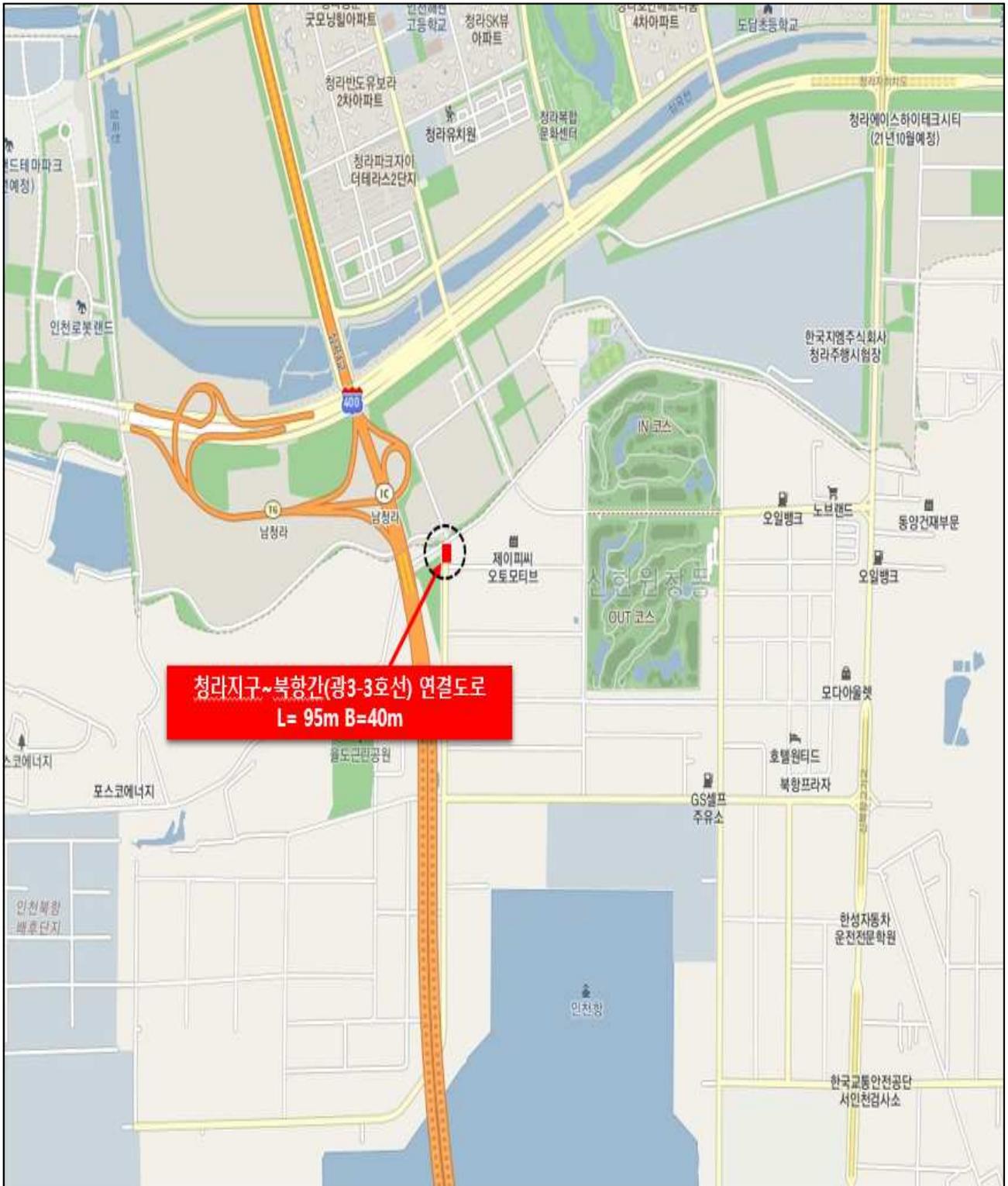
2022년 8월22일

인천광역시장

1. 도로의 종류: 광역시도
2. 노선번호·노선명: 광역시도 38-2호선[청라~북항간 연결도로(광로3-3호선)]
3. 사용개시구간 (L=95m, B=40m)
 - 시 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1-22번지(도)
 - 종 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6-2번지(도)
4. 중요경과지 : -
5. 전용구간
 - 시 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1-22번지(도)
 - 종 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86-2번지(도)
6. 중용구간: “해당 없음”
7. 개시일시: 2022. 8.22. 09시 ~
8. 비 고: 2022. 8. 1. 공사완료 공고

첨부서류 : 지형도 1부.

지형도



청라지구~북항간(광3-3호선) 연결도로
L= 95m B=40m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36호

공시송달공고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 대상자에 대하여 반환금 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반환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부과대상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임 * 양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3**, 4동 20*호(가정동)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시비보조금 환수[57부7149]	2022.7.20.	2022.8.1.	폐문부재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2. 8. 22. ~ 2022. 9. 16.(26일간)

4. 유의사항

- 공고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규정에 의거 보조금 반환대상자로 고지서와 압류예고통지서(압류대상 : 61저2875)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2.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38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320459	주식회사 호성 대표 신원아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35 (신흥동3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3호

「인천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2. 8.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 시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함.

2. 조례(안) 주요내용

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적용범위(제3조)

- 나. 연결허가의 신청(제4조)
- 다. 연결허가 기준 및 금지구간(제5조~제6조)
- 라.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부대시설 등 설치규정(제7조~13조)
- 마. 공사시행 이행사항(제14조)
- 바. 권한의 위임사항(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데이터센터 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이규섭 ☎032-440-3722, fax: 032-440-8672, ks515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 사항

- 가. 인천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 나. 관계법령
-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인천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교차로”란 세 갈래 교차로, 네 갈래 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 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일반국도와 인천광역시도 중 도로구역이 결정된 4차로 이상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 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작성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7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도시지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 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사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제6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 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라.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회신 등 도로 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사이의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제8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본선 차도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5” 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10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2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

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본선 차도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 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3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4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맞게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5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지/별표 인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별지/별표]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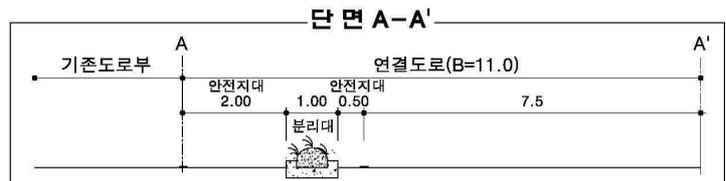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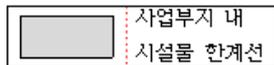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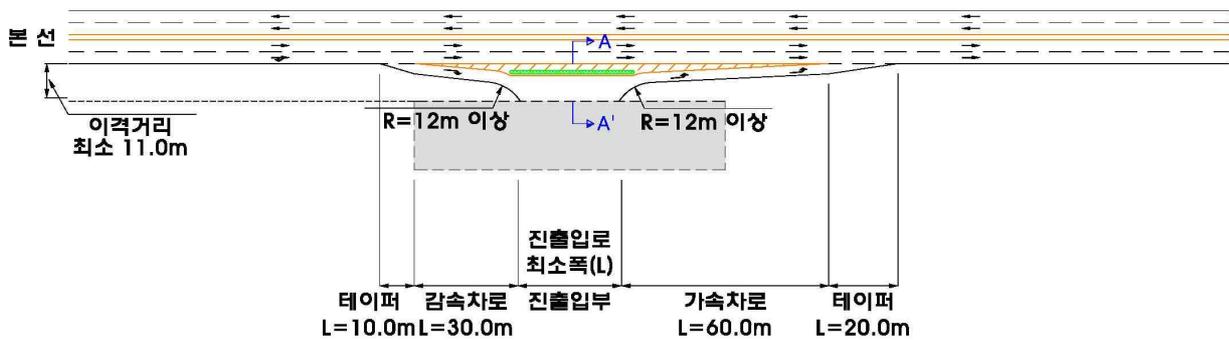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다만, 도로 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점용면적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연속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점용지 경계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導流化施設: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 테이퍼,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중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도로안전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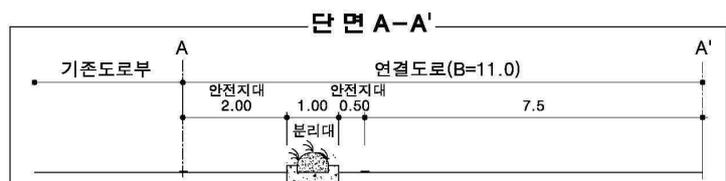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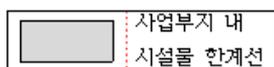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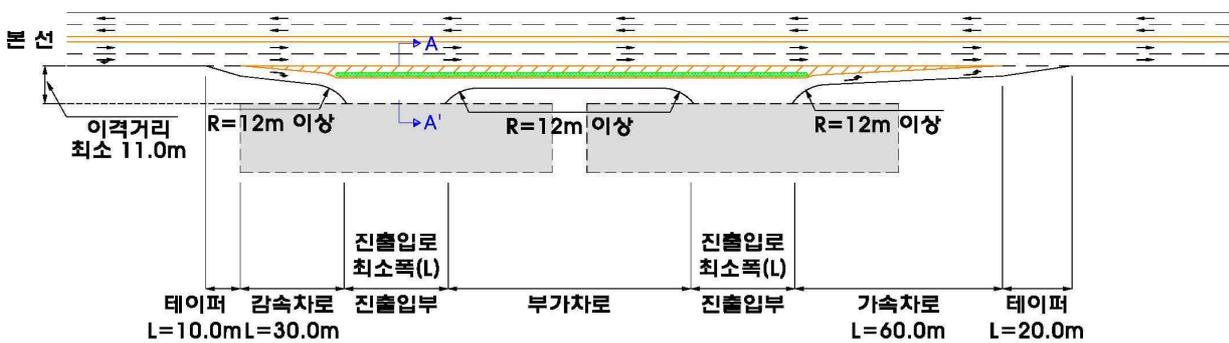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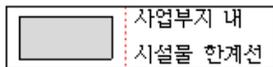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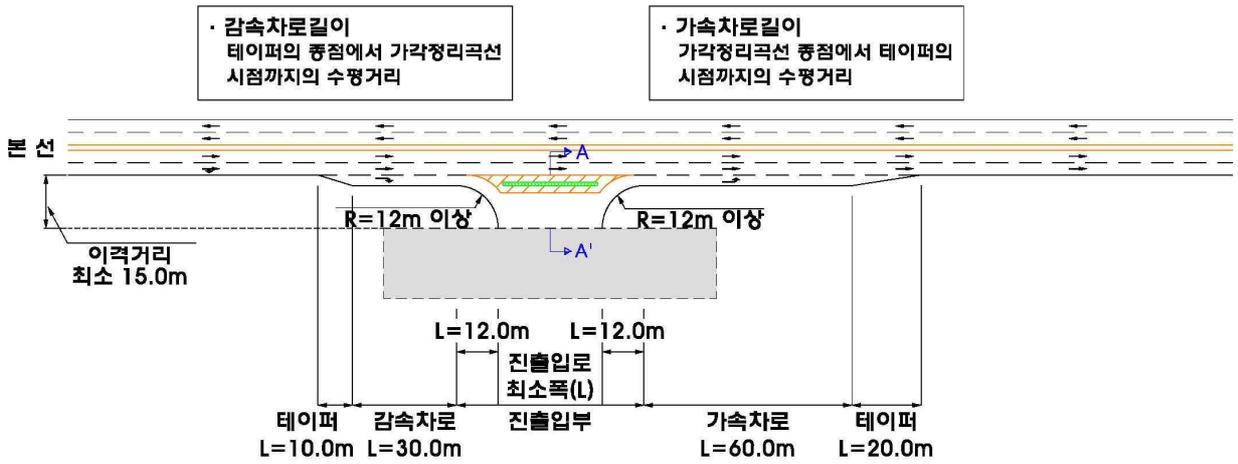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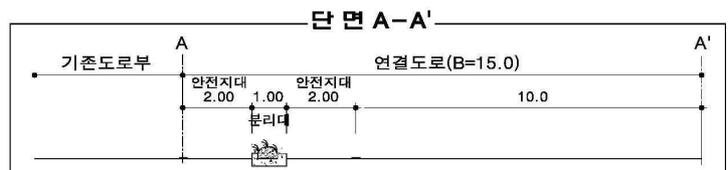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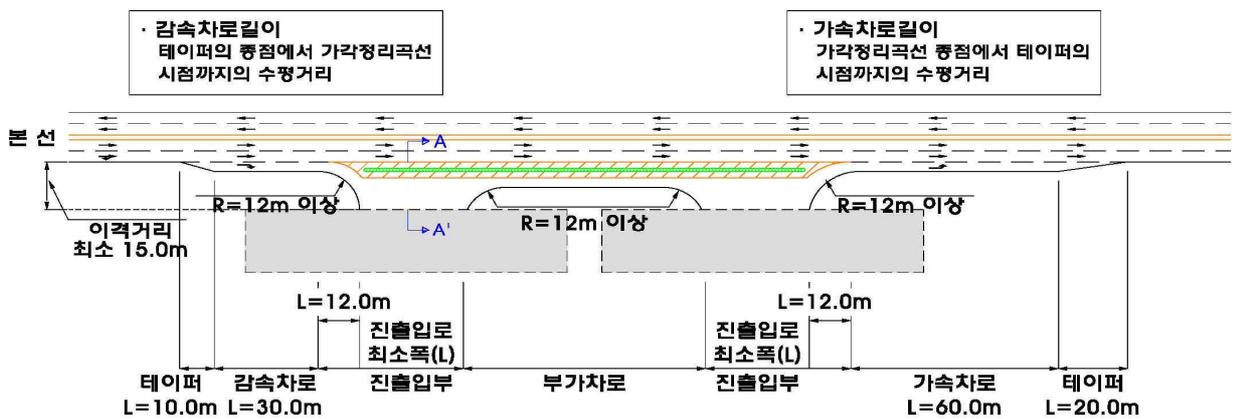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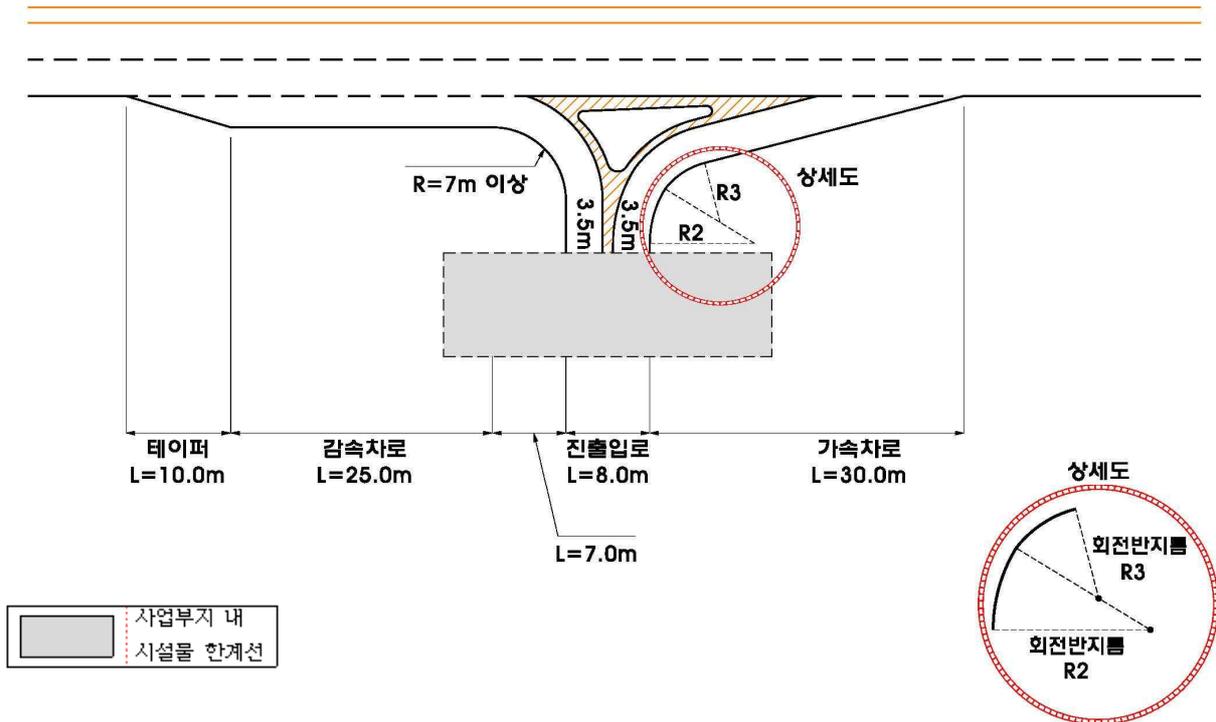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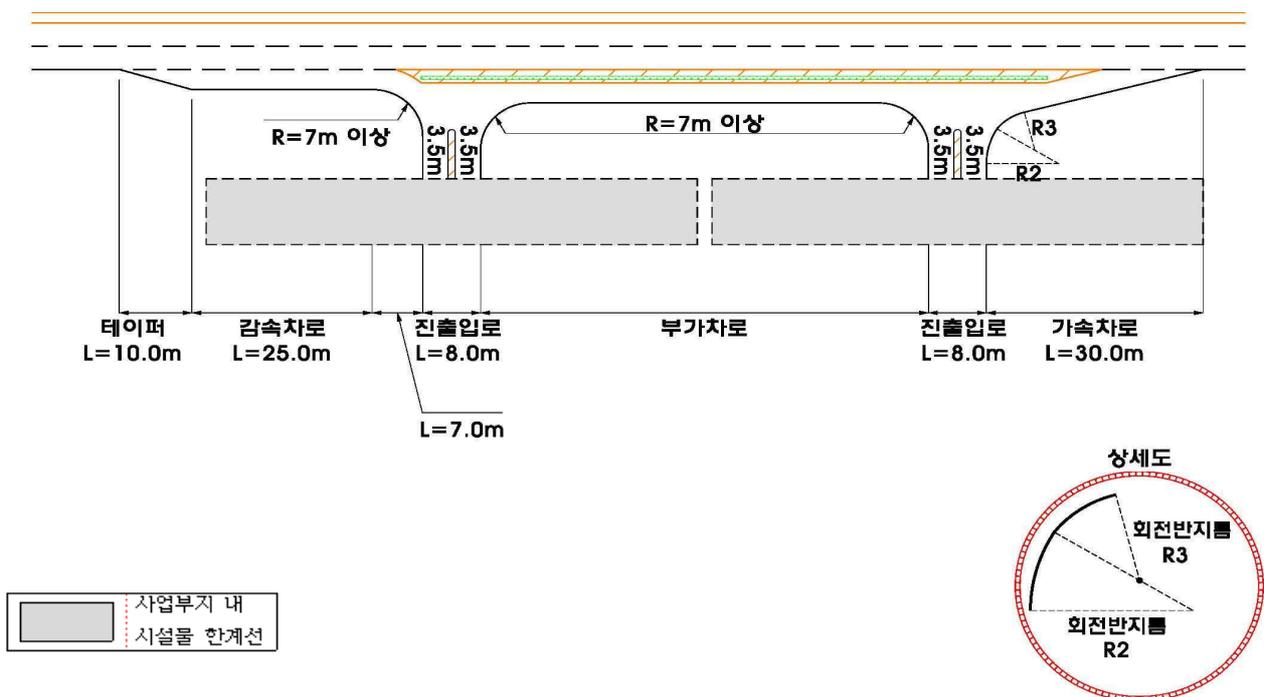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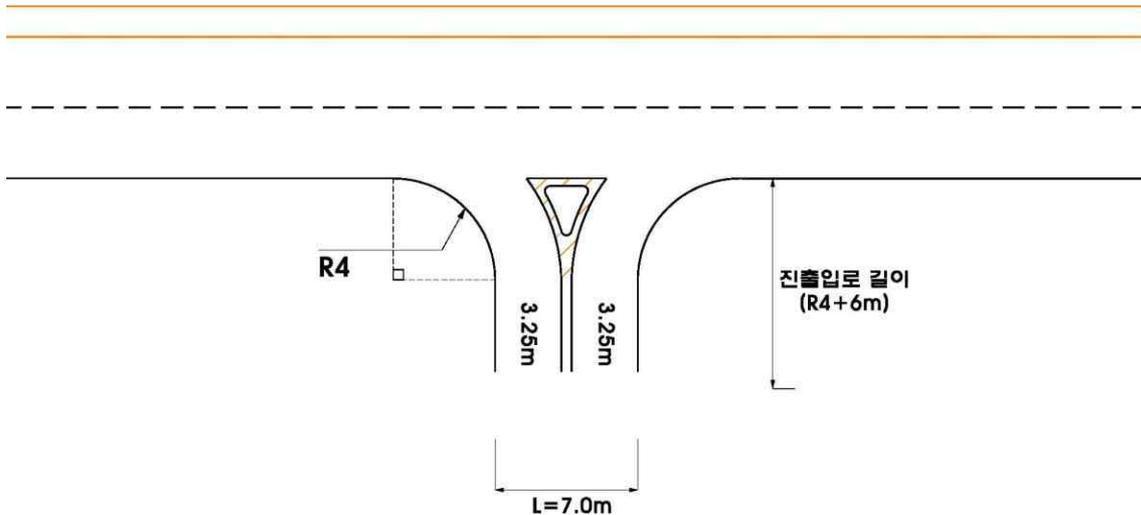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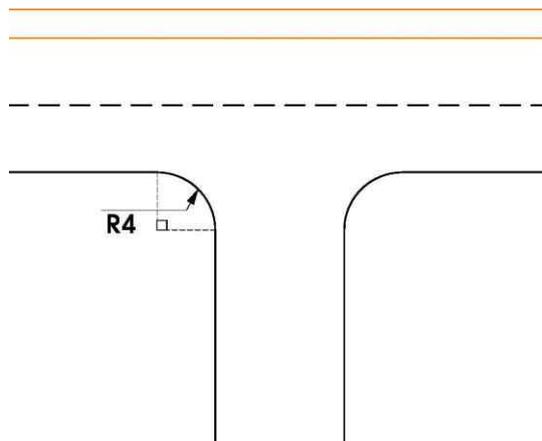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_4) 5미터 이상인 경우



- 나. 곡선 반지름(R_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 은 곡선반지름, L 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 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내 건축한계선 등 본선 차량 통행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 R_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_2 (미터)	R_3 (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7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7조제3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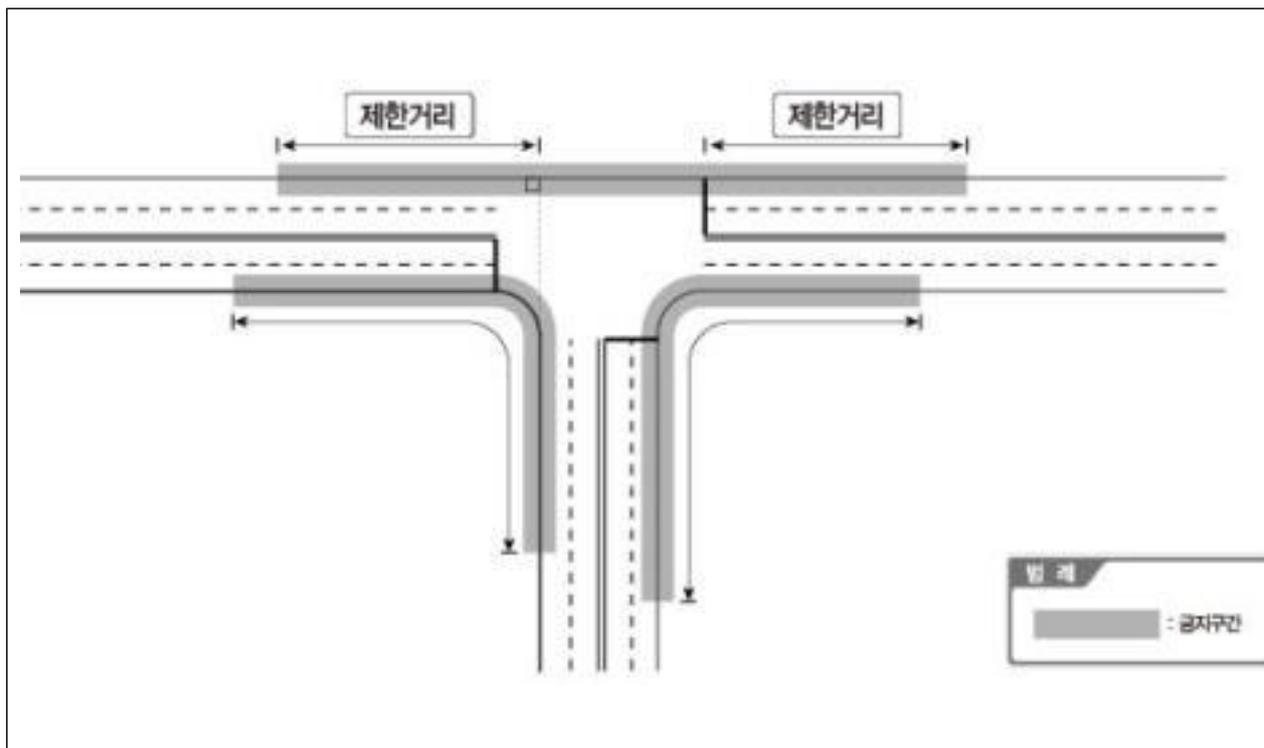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도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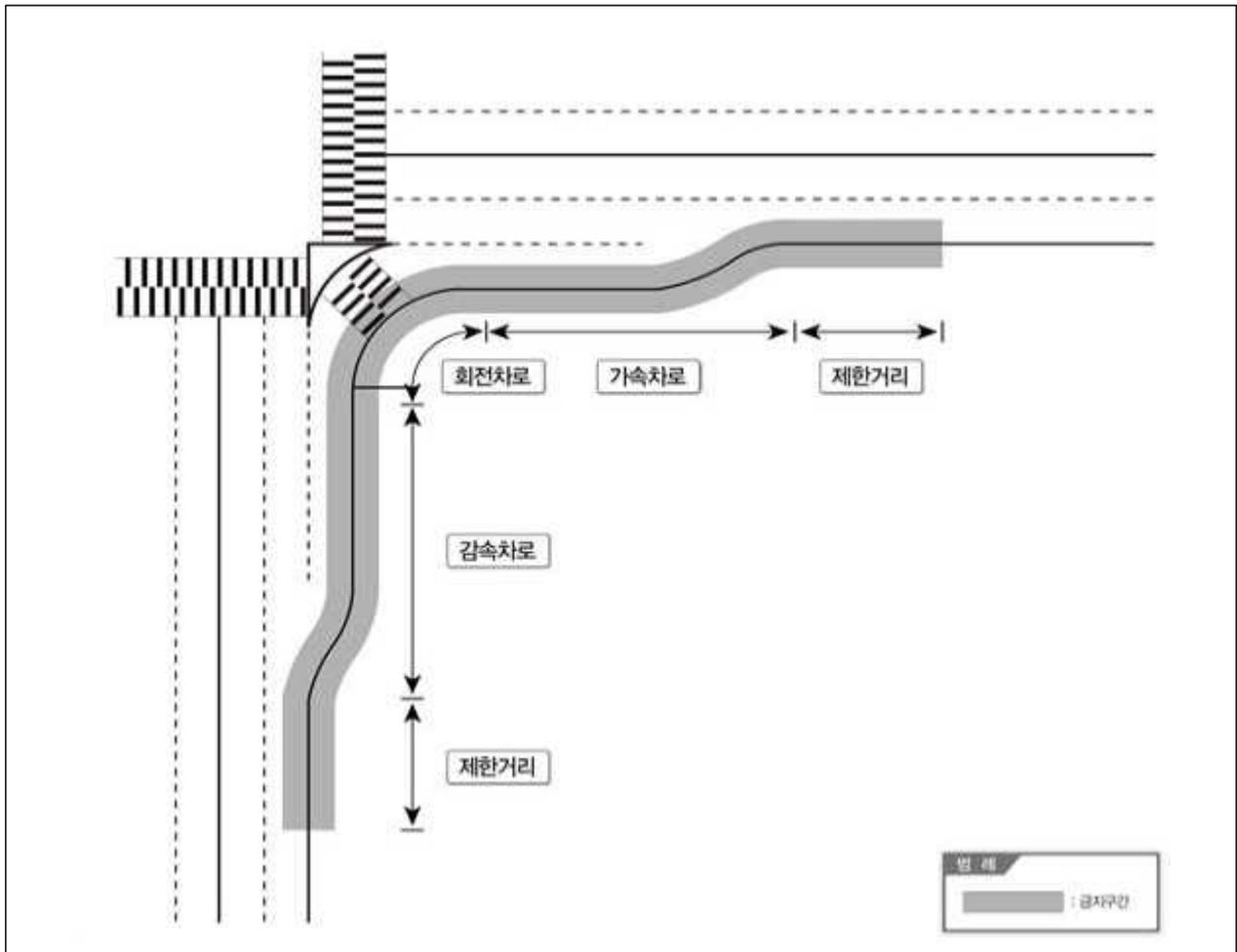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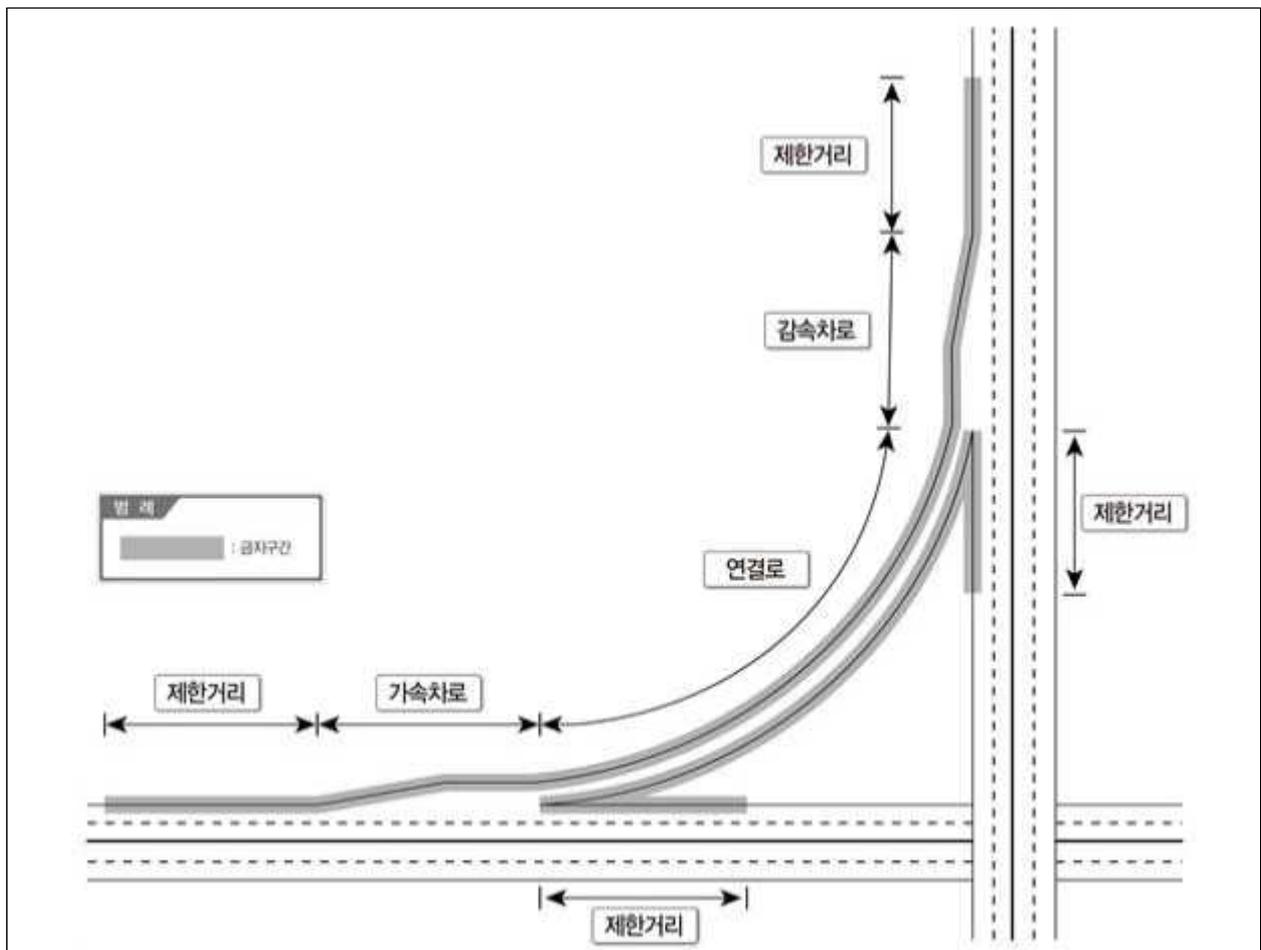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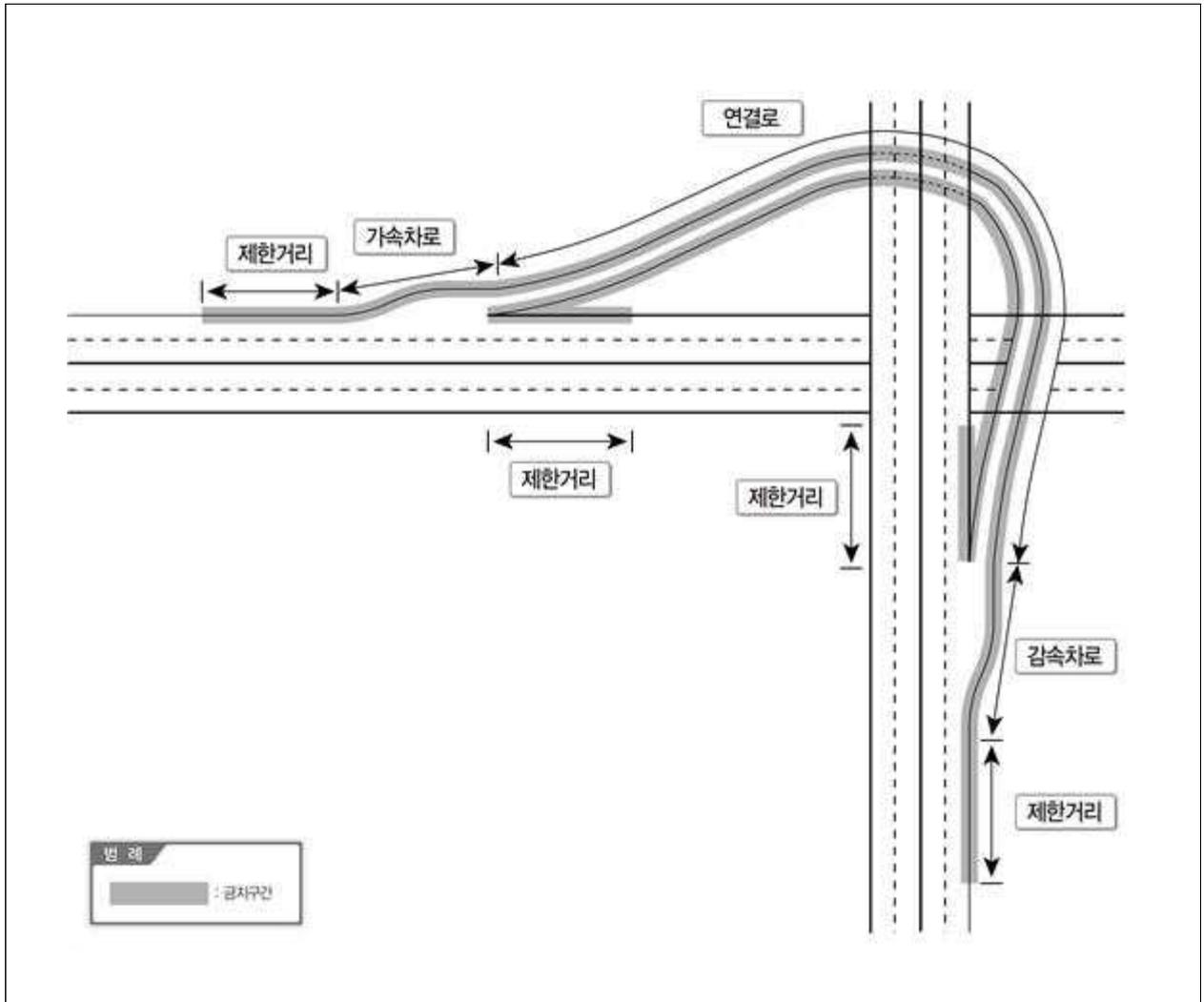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9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1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사.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11대 이상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항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점용기간
	점용장소·점용면적 (m ²)		
	공사 실시방법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 복구방법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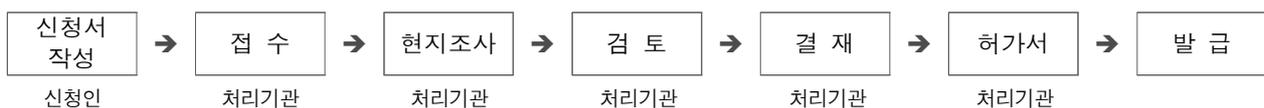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5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점용료는 면제됩니다(「도로법」 제68조제8호). 4. 기부채납 이외의 점용허가 면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5.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연결 신청 장소
	③ 사업부지 장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법정주차대수 등)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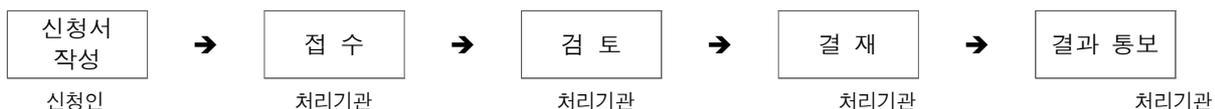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 2. 연결하려는 시설이 포함된 현장사진	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은 민원인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도로관리청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2. 사전확인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허가신청에서 시설물 구조 등의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불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 진출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③란은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장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 2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 ○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로법 시행령」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일반국도
2. 지방도
3.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도로과장 김진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5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적·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총괄 관리 부서의 장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2. 12. 31.) 예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총괄 관리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나.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장(참조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혜림(032-458-7303, 팩스 032-440-8711, wjd46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업무를 담당”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으로 한다.

제8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영) ① (생략) ② 회계는 <u>예산업무를 담당하는</u>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운영자를 둔다. 1. ~ 4. (생략) ③ (생략)	제2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u>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8조(유효기간) ----- <u>2027년 12월 31일</u> -----.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의4(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제물포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물포르네상스 구성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내항재개발 정책수립 및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6.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상상플랫폼 구성에 관한 사항

9.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0. 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1.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신포역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에 관한 사항
13. 우회고가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원도심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 추가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관리주체 정의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3. 작성자: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 윤 기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6호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2022. 12. 31.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8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청(참조 : 교통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윤일 주무관(032-440-3853, unis@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는 <u>2022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제8조의2(존속기한) ----- <u>2027년 12월 31일까지</u> -----.

붙임 2.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비
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7호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규의 통일성을 위한 문장구조를 수정하고 어려운 법령용어,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규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정의(안 제2조)
- 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
- 다. 어려운 법령 용어, 맞춤법 및 법규의 통일성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아동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형미(전화 032-440-4902 / 팩스 032-440-8691 / 전자메일 3ofeel@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4. 참고사항

-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나. 관계법령 1부.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문, 모니터링, 권리구제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구축하고”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아동 및 시민,”을 “아동, 시민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는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의”를 “위촉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아동참여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부의 간섭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2. 아동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건의
3.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p> <p>2.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p> <p>2. (현행과 같음)</p> <p>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문, 모니터링, 권리구제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 ----- ----- 마련하고----- ----- -----.</p>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 지켜야 -----.</p>

1. ~ 5. (생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4. 아동 보호자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아동, 시민 및 -----

--.

제10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6.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7.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는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바.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②·③ (생략)

제1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생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22조(위탁) ①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추진위원회-----

----- 부서의 장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 <단서 삭제>

제18조(구성) ① ----- 위원
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위탁) ① ----- 참여위원회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 2. 아동 관련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외부의 간섭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 2. 아동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건의
- 3.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 4.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

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
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아
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
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
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0조 · 제31조 (생 략)

제31조 · 제32조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와 같음)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에 필요한 수당(안 제30조제6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또는 이유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천시험지구 응시자에게 원서비 지원

2. 개정근거

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나. 「지방자치법」 제28조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인천시험지구 내 응시자

나. 지원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정한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지원

다. 지원방법: 수능시험 응시자 개별 계좌로 지급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중등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중등교육과

- 우편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팩스 : 032-420-8428 / 전화번호 : 032-420-8412

- E-mail : ohsejong@ice.go.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1”

6. 제정안: “붙임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명		단체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원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에 따른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시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졸업(예정)자, 기타 고등학교 학력인정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 인천시험지구에서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를 말한다.

단, 당해연도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수험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원서비”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결정한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시험지구 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원서비가 지원되도록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한 자
2.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당해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에 응시한 자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기본계획
2. 지원 방식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수험생이 희망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시행방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명		단체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21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치료비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2조의2항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 제12조

4. 의견제출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체육건강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8444, 팩스)032-420-8454
 - E-mail: yheel1008@ice.go.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6. 제정 조례안: [붙임 2]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난치병 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

는 경비로서 다음과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함.

②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치료비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9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다만,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

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

3.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계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해당사항 없음”

정비 대상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학교보건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희귀질환관리법

1.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2조(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